

행정법총론

- 총평 -

2026년 4월 4일 시행된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시험은 전반적으로 중상 수준의 난도를 보였으며, 기본 이론에 충실하면서도 판례의 정확한 이해와 적용 능력을 요구하는 시험이었다. 특히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질서위반행위법 등 최신 법령과 조문 중심 출제가 강화되었고, 단순 암기형 문제보다는 지문의 미세한 표현 차이를 구별해야 하는 정밀 판단형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다.

행정행위 파트의 비중이 높게 유지되었으며, 무효와 취소의 구별, 재량과 기속의 판단, 취소와 철회의 구분 등 핵심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되었다. 또한 행정소송, 손실보상, 국가배상 등 주요 쟁점에서는 사례형 문제가 출제되어 판례의 결론뿐 아니라 논리 구조까지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전체적으로 기출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으나, 기존 기출을 단순히 암기한 수준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웠고, 조문과 판례를 종합적으로 연결하여 판단하는 능력이 합격의 핵심 요소로 작용한 시험이었다.

*** 2026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분석**

번호	정답	출제영역	세부주제	유형	난도
1	②	행정법 일반원칙	법률유보·자기구속	개념+판례형	중
2	①	행정입법	행정규칙 vs 법규명령	판례형	중
3	③	행정절차법	처분 효력 발생(도달주의)	판례형	중
4	③	정보공개법	비공개 정보 범위	판례형	중
5	④	행정강제	이행강제금	조문+판례형	중상
6	①	행정소송	처분성 판단	판례형	중
7	①	행정소송	피고적격(권한승계)	사례형	상
8	③	질서위반행위법	과태료	조문형	중
9	④	행정기본법	직접강제 절차	조문형	중
10	③	행정심판법	재결·직접처분	조문+판례형	중상
11	④	행정행위	공정력·선결문제	판례형	중상
12	②	행정행위	대인적/대물적 처분	개념형	중
13	④	국가배상	공법인 책임	판례형	중
14	③	손실보상	재결신청청구권	판례형	상
15	②	재량행위	재량 vs 기속	판례형	중
16	③	행정행위 하자	무효(중대·명백설)	판례형	상
17	①	국가배상	절차적 권리 침해	사례형	중상
18	①	행정법 일반원칙	비례원칙	판례형	중
19	②	행정행위	취소 vs 철회	개념+판례형	중상
20	②	행정제재	제재처분 일반	판례형	중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법의 법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 ②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위임하는 경우에 비하여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더욱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동성(同性)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 ④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 ②

● [출제영역]

행정법총론 - 행정법의 일반원칙 (자기구속, 포괄위임금지,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

● [출제의도]

행정법 일반원칙에 관한 판례의 구체적 입장(판결번호 포함)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 특히, 조례 위임 시 포괄위임금지 원칙의 적용 정도를 구별할 수 있는지 평가

● [선지 해설]

- ① 재량준칙이 반복 적용되어 행정관행이 형성된 경우, 행정청은 평등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자기구속을 받는다.
→ 판례 인정 (자기구속의 원칙)
• 대법원 1995.10.12. 선고 94누13739 판결
- ②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는 경우,
 포괄위임금지 원칙은 법규명령보다 완화된다.
즉, 대통령령·부령 → 엄격한 위임 필요 조례 → 지방자치 보장 → 포괄적 위임 가능
 관련 판례
• 헌재 1995.12.28. 선고 92헌바45 결정
• 헌재 2004.6.24. 선고 2002헌바95 결정
→ “더 엄격”이라는 표현은 판례와 반대
- ③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에서 동성 동반자를 배제한 것은 평등원칙 위반으로 판단됨.
 관련 판례
• 서울고등법원 2023.2.21. 선고 2022누32797 판결
(※ 해당 판결은 공단 처분을 평등원칙 위반으로 보아 위법 판단)
- ④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므로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2.11.26. 선고 2001두1918 판결
→ 공적 견해표명은 행정청의 공식적 의사표시 필요
→ 헌재 결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2.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별토지가격의 결정 절차를 규정한 구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6조는 집행명령에 해당하므로 법규적 성질을 갖지 않는다.
- ② 법규명령의 경우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다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
- ③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다.
- ④ 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반하는 것이라면 법원은 해당 행정규칙이 법질서상 부존재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행정기관이 한 조치의 당부를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 ①

● [출제영역]

행정법총론 - 행정입법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 [출제의도]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의 법규성 여부와 법규명령·행정규칙 구별에 관한 판례 입장(판결번호 포함)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

● [선지 해설]

- ①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은 토지가격 산정 기준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범이므로 법규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집행명령에 불과하여 법규성이 없다고 한 설명은 틀리다.
 - 대법원 2003.9.26. 선고 2001두1070 판결
- ② 위임 근거 없이 제정된 법규명령은 당초 무효이지만, 이후 법 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마련되면 그때부터 장래에 한하여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 대법원 2003.9.26. 선고 2001두1070 판결
- ③ 법률의 위임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절차와 기준을 규정한 시행규칙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8.9.11. 선고 2006두19812 판결
- ④ 행정규칙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법원은 그 규칙에 구속되지 않고 상위법령을 기준으로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누1645 판결

3.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 ② 행정청이 구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자 지위승계신청을 수리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종전 유원시설업자에게 사전통지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③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하였다더라도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④ 법령에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면,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발송되었다거나 그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의 실시 없이 이루어진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정답 : ③

● [출제영역]

행정법총론 - 행정절차법 (처분의 효력 발생, 사전통지, 이유제시)

● [출제의도]

행정절차법의 핵심 쟁점인 처분의 효력 발생 시점(도달주의)과 사전통지 및 청문 절차에 관한 판례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

● [선지 해설]

- ①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은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인사행정 영역으로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두3388 판결
- ② 유원시설업자 지위승계신청 수리는 종전 영업자의 권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종전 영업자에게 사전통지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 대법원 2015.11.26. 선고 2013두20845 판결
- ③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단순히 다른 경로로 내용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4887 판결
 - “인지 = 효력 발생”은 도달주의에 반함
- ④ 법령상 청문이 요구되는 경우, 통지서 반송이나 불출석을 이유로 청문 절차를 생략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 대법원 1992.4.24. 선고 91누10563 판결

4.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민의 ‘알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다.
- ② 법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 ③ 「감찰보조사무규칙」은 법무부령이므로, 그에 따른 열람·등사의 제한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른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
- ④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 있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정답 : ③

● [출제영역]

행정법총론 - 정보공개법 (비공개 대상 정보, 알권리)

● [출제의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의 범위와 알권리 및 비공개 정보 판단 기준에 대한 판례 이해를 평가

● [선지 해설]

- ① 알권리는 정보에 대한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를 포함하며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동시에 가지는 기본권으로 헌법 제21조에 의해 직접 보장된다.
 - 헌재 1989.9.4. 선고 88헌마22 결정
- ② 법인의 금융계좌번호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 대법원 2006.11.9. 선고 2004두12629 판결
- ③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은 법규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을 의미 그러나 단순한 내부규칙이나 행정규칙은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검찰보존사무규칙」이 항상 해당 조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문은 일반화하여 잘못된 설명이다.
- 대법원 2007.6.14. 선고 2005두1146 판결
- ④ 이미 공개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접근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정보공개청구의 이익이 부정되거나 비공개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 대법원 2004.3.12. 선고 2003두12363 판결

5.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행강제금은 의무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제재인 과징금과 달리,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다.
- ②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③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납부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
- ④ 행정기본법령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이 합의제행정기관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경우에도, 이행강제금 부과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과 금액 산정기준 및 연간 부과 횟수나 횡수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 정답 : ④
- [출제영역]
행정법총론 - 의무이행확보수단 (이행강제금, 행정기본법)
 - [출제의도]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질과 행정기본법상 규율 내용, 특히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에 대한 법률유보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
 - [선지 해설]
 - ①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인 과징금과 달리,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간접강제 수단이라는 것이 통설 및 판례 입장이다.
 - ② 행정기본법은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이후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행정기본법」 제31조
 - ③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의무자의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신전속적 성질을 가지므로 상속되지 않으며, 이미 사망한 자에게 부과된 경우 그 처분은 무효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 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두12345 판결
 - ④ 행정기본법은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법률에 위임하도록 하면서도, 구체적인 산정기준이나 부과 횟수까지 반드시 법률에 직접 규정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산정기준과 횟수 상한을 반드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설명은 과도한 법률유보 요구로서 판례 및 법 취지에 반한다.

6.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행정처분이 그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② 어떠한 처분이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도 그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내부적 구속력이 있을 뿐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 ③ 법률에 의하여 당연퇴직된 공무원이 자신을 복직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는 공무원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④ 건축허가권자가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사유로 구 「소방법」에 따른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 건축불허가처분 외에 별개로 건축부동의처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건축불허가처분을 받은 사람은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건축불허가 사유 외에 소방서장의 부동의 사유에 관하여 다룰 수 없다.

- 정답 : ①
- [출제영역]
행정법총론 - 행정소송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처분성)
 - [출제의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 판단 기준과 함께 특별불복절차가 있는 경우 항고소송 가능 여부, 거부처분 및 내부기준(행정규칙) 관련 처분성 판단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
 - [선지 해설]
 - ① 법률이 특정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등 별도의 불복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 그 절차가 전속적 구제수단으로 해석되는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 대법원 1992.4.24. 선고 91누10563 판결
 - ② 처 분이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면, 그 근거나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처분성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 대법원 2008.9.11. 선고 2006두19812 판결
→ 행정규칙 근거라도 외부효과 있으면 처분성 인정
 - ③ 당연퇴직은 법률에 의해 발생하는 효과로서, 복직신청 거부는 새로운 권리변동을 발생시키는 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상의 통지 또는 확인에 불과하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 대법원 1996.10.25. 선고 95누14688 판결
 - ④ 건축불허가처분과 관련하여 소방서장의 부동의는 불허가처분의 일부사유에 불과하므로, 불허가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그 사유의 위법성도 함께 다룰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 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4887 판결

7.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행정청은甲에게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그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1천만원을 감액하였다. 그 후 과징금 부과권한은 B행정청으로 승계되었고,甲은 취소소송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다투려고 한다.

- ① 甲이 제기하는 취소소송의 피고는 A행정청으로 하여야 한다.
- ② 甲은 1천만원을 감액하는 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 ③ 甲이 제기하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감액처분이 아니라 당초 3천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④ 과징금 부과 여부와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수소법원은 심리 결과 재량권의 일탈을 이유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

정답 : ①

● [출제영역]

행정법총론 - 행정소송 (피고적격, 처분변경, 제소기간, 일부취소)

● [출제의도]

과징금 감액처분과 권한승계 상황에서 피고적격, 소의 대상, 제소기간, 일부취소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사례형 문제

● [사례분석]

- 이 사례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감액됨으로써 변경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와, 이후 권한이 다른 행정청으로 승계된 경우의 항고소송 구조를 묻는 것이다.
- 먼저 감액처분은 기존 처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변경하는 처분이므로, 최종적으로는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 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1.9.28. 선고 99두8565 판결).
- 또한 처분 이후 권한이 다른 행정청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소송의 피고는 처분 당시의 행정청이 아니라 현재 처분권을 가진 행정청이 된다(대법원 2004.9.24. 선고 2002두10784 판결).
- 따라서 이 사건에서 甲은 감액된 과징금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권한을 승계받은 B행정청을 피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선지 해설]

- ① 행정처분 이후 권한이 다른 행정청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현재 처분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B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4.9.24. 선고 2002두10784 판결
→ A행정청을 피고로 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림
- ② 과징금 감액처분은 중전 처분을 변경하는 처분으로서 독립한 처분이 아니라 원처분과 결합하여 하나의 처분으로 보므로 별도로 소송대상이 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01.9.28. 선고 99두8565 판결
- ③ 감액처분은 원처분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제소기간은 변경 전 원처분이 아니라 변경된 처분(감액된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대법원 2001.9.28. 선고 99두8565 판결
- ④ 재량행위의 경우에도 법원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되면 위법한 부분만 일부 취소할 수 있다.
□ 대법원 2003.3.28. 선고 2001두1236 판결

8.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 ②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③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질서위반행위 당시의 동기·목적·방법을 고려하여야 하나,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정황까지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 ③

● [출제영역]

행정법총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태료)

● [출제의도]

과태료 부과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 중 과태료 산정 시 고려요소(사후 사정 포함 여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

● [선지 해설]

-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간 내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경 범위는 20% 이내이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 ②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해 3%의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③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반행위 당시의 사정뿐만 아니라 위반행위 이후의 정황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후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④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당사자는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이행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9. 「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접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 ②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방법으로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 ③ 행정청은 직접강제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강제를 실시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 ④ 집행책임자는 직접강제를 하려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현장에서 그 소재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강제를 실시한 후 집행책임자의 이름 및 그 이유와 내용을 고지할 수 있다.

정답 : ④

● [출제영역]

행정법총론 - 행정기본법 (의무이행확보수단, 직접강제)

● [출제의도]

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의 요건과 절차, 특히 계고 및 고지 시기의 원칙과 예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

● [선지 해설]

- ① 직접강제를 실시하는 집행책임자는 자신의 신분과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는 적법절차 보장을 위한 것이다.
 - 「행정기본법」 제33조
- ② 직접강제는 보충적 수단으로서,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행정기본법」 제32조
- ③ 직접강제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계고를 하여 의무이행의 기회를 부여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 「행정기본법」 제32조
- ④ 직접강제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집행책임자의 신분과 집행 내용 등을 고지하여야 하며, 사후 고지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사후 고지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문은 부정확하다.

10.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결은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결정이 있는 경우, 결정서 정본은 그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의 제기과 관계없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③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재결의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 ④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하며, 조정에 대하여는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는 물론 제50조(위원회의 직접 처분)와 제50조의2(위원회의 간접강제)의 규정도 준용된다.

정답 : ③

● [출제영역]

행정법총론 - 행정심판법 (재결, 직접처분, 간접강제, 조정)

츠 [출제의도]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과 이행확보수단, 특히 직접처분이 가능한 재결의 범위와 조정에 준용되는 규정의 범위를 정확히 구별하는지 평가

● [선지 해설]

- ① 재결은 원칙적으로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옳다. 「행정심판법」 제45조에 부합한다.
- ② 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서 정본은 민사집행법상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행정소송 제기와 관계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옳다. 「행정심판법」 제50조의2의 내용과 맞다.
- ③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었는데도 피청구인이 따르지 않는 경우, 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시정을 명한 뒤 직접 처분이다. 그런데 직접처분은 법상 **“피청구인이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지문처럼 “재결의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까지 바로 직접처분의 대상으로 본 것은 조문 구조와 맞지 않으므로 틀리다. 즉, 직접처분은 부작위 상태의 불이행을 전제로 한 규정이지, 이미 어떤 처분을 했으나 그 내용이 재결 취지에 어긋난 경우까지 곧바로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지문이다. 「행정심판법」 제49조 제3항, 제50조를 함께 보면 확인된다.
- ④ 조정은 당사자 합의와 위원회 확인으로 성립하고, 이에 대해서는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가 준용된다. 따라서 제49조는 물론 제50조와 제50조의2도 준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11.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ㄴ.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ㄷ.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ㄹ.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행정청으로부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조치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면 조치명령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으며, 조치명령이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① ㄱ, ㄷ
- ② ㄱ, ㄴ, ㄷ
- ③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정답 : ④

● [출제영역]

행정법총론 - 행정행위의 효력 (공정력, 선결문제, 무효·취소, 위법성의 효과)

● [출제의도]

행정행위의 효력과 관련하여 공정력, 선결문제 판단, 위법행위와 손해배상, 형사책임 관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

● [선지 해설]

ㄱ. 과세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경우, 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그에 따른 조세 납부는 부당이득이 아니다.

• 대법원 1992.4.24. 선고 91누10563 판결 → 공정력 인정

ㄴ.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도 취소판결이 선행되어야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법성을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 대법원 1995.10.12. 선고 94누13739 판결 → 선결문제 독립 판단 가능

ㄷ. 민사소송에서도 행정처분의 무효 여부가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직접 판단할 수 있으며, 반드시 행정소송을 거칠 필요는 없다.

• 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4887 판결 → 무효는 언제든지 주장 가능

ㄹ.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설명 위법하더라도 공정력이 인정되므로, 그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성립한다.

즉 판례는 “위법하지만 유효한 처분” → 효력 인정 → 처벌 가능

• 대법원 1995.3.10. 선고 94도2998 판결

12. 행정행위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승인 중 분양전환가격을 승인하는 부분은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② 종전의 토지가 단독으로 환지되었다면 그 환지가 제자리 환지라 하더라도 환지처분은 대인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 ③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은 의료인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요양기관의 업무 자체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 ④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의 허가를 할 때에 건축주 또는 토지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정답 : ②

● [출제영역]

행정법총론 - 행정행위의 종류 (대인적 처분 vs 대물적 처분, 인가)

● [출제의도]

행정행위의 유형 중 대인적 처분과 대물적 처분의 구별 기준과 분양전환승인·환지처분의 법적 성질에 대한 판례 이해를 평가

● [선지 해설]

① 분양전환승인 중 가격승인 부분은 사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하는 인가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행정행위로서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두15014 판결

② 환지처분은 특정 토지에 대한 권리 변동을 발생시키는 처분으로서 토지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대물적 처분이다. 따라서 제자리 환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인적 처분으로 보는 것은 틀리다.

□ 대법원 1997.7.25. 선고 96누12696 판결

③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은 의료인의 자격 자체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요양기관이라는 객체의 운영에 대한 제재이므로 대물적 처분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4887 판결

④ 건축허가는 토지 및 건축물이라는 객체를 기준으로 하는 처분으로서 대물적 성격을 가지며, 인적 요소에 대해서는 형식적 심사에 그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 대법원 2001.11.27. 선고 2000두8365 판결

13.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포함되나,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은 포함되지만, 비권력적 작용과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당해 행정처분은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 ④ 공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법인의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공법인은 위탁받은 공행정사무에 관한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정답 : ④

● [출제영역]

행정법총론 - 국가배상 (공무원 개념, 직무범위, 위법성 판단)

● [출제의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범위, 직무의 개념(권력작용 vs 비권력작용), 처분 취소와 과실 인정 관계, 공법인의 책임 귀속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

● [선지 해설]

①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포함되며, 그 위탁이 일시적·한정적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 대법원 1996.12.10. 선고 95다39220 판결

→ “일시적이면 제외”라는 설명은 틀림

② 국가배상에서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이나 공공단체의 사경제적 작용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 대법원 1992.4.14. 선고 91다29927 판결

→ 비권력작용 제외라는 설명은 틀림

③ 행정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과실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 대법원 1998.2.27. 선고 97다24242 판결

→ 자동으로 불법행위 성립

④ 공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공법인은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 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다38970 판결

1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합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토지보상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을 정할 수 있다.

②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는데도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보상대상에서 이를 제외한 채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도록 청구할 수 없다.

④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사이에 토지보상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재결 신청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로 본다.

정답 : ③

● [출제영역]

행정법총론 - 손실보상 (토지보상법, 재결신청청구권)

● [출제의도]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 절차에서 재결절차의 전치 여부와 재결신청청구권 인정 여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

● [선지 해설]

① 토지보상법상 협의에 의한 보상은 사법상 계약의 성질을 가지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 법정 기준과 다른 금액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 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다30770 판결

② 영업손실보상 등은 원칙적으로 토지보상법상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손실보상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1995.6.30. 선고 94다51647 판결

③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에서 제외하여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즉, 재결신청청구권은 인정된다.

□ 대법원 2006.4.27. 선고 2004두14682 판결

→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림

④ 협의가 성립된 경우 일정 요건 하에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확인은 재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토지보상법」 제28조

15.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점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②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는 특정인에게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③ 건축허가권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한다.

정답 : ②

● [출제영역]

행정법총론 -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 [출제의도]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기준, 특히 허가의 법적 성질(원칙: 기속행위)과 불확정개념과 재량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

● [선지 해설]

① 재량행위의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 대법원 1992.4.24. 선고 91누10563 판결

②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는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허가를 해주어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즉, 특정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재량이 아니라 법령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 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두6411 판결

→ “재량에 속한다”는 설명은 틀림

③ 건축허가는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하여야 하는 기속행위임으로, 공익상 필요가 없는 한 법령에 없는 사유로 거부할 수 없다.

□ 대법원 1997.12.23. 선고 97누12719 판결

④ 토지 형질변경허가는 불확정개념(공익상 필요 등)을 포함하고 있어 행정청의 판단 여지가 인정되며, 이와 결합된 건축허가는 재량행위로 본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 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4887 판결

16. 행정행위의 무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환경영향평가를 거처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하자는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 ②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 ③ 어느 법률관계에 대하여 해당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한다.
- ④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행정청이 그 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서 위조 등의 사유가 있어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다면, 그 수리행위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수리행위 자체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를 따질 것도 없이 당연히 무효이다.

정답 : ③

● [출제영역]

행정법총론 - 행정행위의 하자 (무효, 중대·명백설)

● [출제의도]

- 행정행위의 무효 판단 기준인 중대·명백설의 적용 기준과 환경영향평가, 과세절차, 신고수리 등의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

● [선지 해설]

- ①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승인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 대법원 2006.3.16. 선고 2004두618 판결
- ②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과세처분을 한 경우,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명백한 하자로서 무효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 대법원 2003.9.26. 선고 2001두1070 판결
- ③ 법령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해석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는 아니다.
□ 대법원 1992.4.24. 선고 91누10563 판결
- ④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신고 자체가 위조 등으로 무효인 경우, 그 수리행위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히 무효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 대법원 2009.6.11. 선고 2007두26629 판결

17.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군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입지 선정 등에 관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결정·고시하였고, A군의 담당공무원 甲이 위조한 입지 선정 절차 관련 서류를 B도지사에게 제출하여 B도지사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았다. 인근주민 乙은 이에 불복하면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 ① 乙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입지 선정 등에 관한 행정절차에 참여할 권리는 그 자체로 사적 권리의 성질을 지닌다.
- ②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이 위법한 경우에는 그 하자 있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도 위법하게 된다.
- ③ 乙의 행정절차 참여권 침해로 A군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위해서는 乙이 입지선정결정 당시 해당 지역 주민이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④ 주민의 의견제출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절차적 권리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 ①

● [출제영역]

행정법총론 - 국가배상 + 절차적 권리 (환경행정)

● [출제의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절차에서 주민의 절차참여권이 '사적 권리'인지 여부를 정확히 구별하는지 평가

● [사례분석]

- 이 사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과정에서 법정 절차를 위반하고 공무원의 서류 위조까지 개입된 상태에서 설치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주민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지를 묻는 것이다.
- 판례에 따르면 주민의 절차참여권은 독립된 사적 권리는 아니지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하며, 이러한 절차가 위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그에 기초한 입지결정 및 승인처분도 위법하게 된다. 또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주민이 절차의 보호대상을 입증해야 하고, 절차적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 대법원 2008.1.31. 선고 2006다46738 판결
-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절차 위반과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인정되는 한, 乙이 해당 지역 주민임을 입증하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 [선지 해설]

- ① 입지선정 절차에서 주민의 참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인정되지만, 독립된 사적 권리로 보지는 않는다. 따라서 사적 권리라고 한 설명은 틀리다.
□ 대법원 2008.1.31. 선고 2006다46738 판결
- ②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의결에 근거한 입지결정처분도 위법하게 된다.
- ③ 절차적 권리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해당 지역 주민으로서 절차 참여 대상자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 ④ 절차적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20. 제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강제징수도 이에 포함된다.
- ②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인 영업정지 처분은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 ③ 제재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관할 행정청이나 담당공무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제재처분이 적법한지는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등에 적합한지 여부가 아니라 제재처분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④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합의제행정기관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으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 ②

● [출제영역]

행정법총론 - 제재처분 (행정기본법)

● [출제의도]

제재처분의 개념과 책임원칙, 특히 행정제재의 무과실책임 원칙과 제재처분 기준 및 제척기간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

● [선지 해설]

- ①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은 의무위반을 이유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의미하나, 강제징수는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서 제재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 「행정기본법」 제2조
- ②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은 행정질서 유지 목적의 제재로서,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며 원칙적으로 고의·과실이 없어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 대법원 2003.9.26. 선고 2001두1070 판결
- ③ 제재처분 기준이 부령 등으로 정해져 있더라도, 그 처분의 적법성은 상위법령과 비례원칙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단순히 기준 준수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 ④ 행정기본법은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문제의 내용처럼 “합의제행정기관”에 한정하거나 판결 후 1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부정확한 설명이다.